

구성원 참여 · 소통에 관한 규정

제정 2022.01.20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의 참여 및 소통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- ①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의 정의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1. 참여 : 대학 운영과 관련한 구성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의 수렴
 2. 소통 :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, 의견 및 제안사항의 검토·심의 결과에 대한 구성원과의 공유

제3조(대상)

- ①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의견수렴의 대상인 ‘구성원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교원
 2. 직원
 3. 재학생
 4. 조교
- ② 필요한 경우 동문, 산업체, 학부모,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범위)

-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의 결정 시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.
1.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
 2. 대학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계획 등에 관한 사항
 3. 대학 행정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사항
 4.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
 5. 학과(전공)신설, 통합, 명칭변경, 폐지, 정원조정 및 교원의 소속변경 등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사항
 6. 대학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
 7. 기타 대학과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

제5조(운영방법)

- ① 교육 정책 및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

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.

1. 업무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
2.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
3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각종 설문조사
4. 정책과제 연구사업
5. 온라인 소통창구(교내 홈페이지 내 ‘제안합니다.’, ‘자유게시판’ 등)
6. 기타 대학에서 추진하는 참여 및 소통을 위한 사항

제6조(구성원참여·소통위원회)

구성원 참여·소통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계획 및 기타 참여·소통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성원 참여 소통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기타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2.01.20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